



의안번호	제 68 호
의 결	2007년 4월 10 일
년 월 일	( 179 회)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7년 4월 6 일

#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07. 4. 6 .

제 출 자 : 음성군수

소관 부서 : 기획감사실

1. 안 건 명 :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 심의 기구가 설치된 사항이 있고, 일부 구법으로 폐지되는 등 현행법에 부합 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하고자 함.

### 3. 개정 주요내용

제3조 <결정사항> 중

#### ○ 삭 제(타 법령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된 사항)

- 제7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07. 1. 1)  
(제32조에 의한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제11호 "나" :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 운용 조례제4조에 의한 기금조성 및 심의 ('06. 5. 17 개정 /음성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 제11호 "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심의 ('04. 1. 29 개정/법률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 제11호 "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심의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2000.10월)

#### ○ 삭 제(관련법 폐지)

- 제6호 : 취로대책 ('99. 9. 7 법 제정 → 자활사업으로 변경)
- 제11호 "차"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급 및 실천 심의 ('04. 2. 9 건전가정 기본법 제정)

#### ○ 삭제( 관련법에 의거 추진)

- 제3조 제9호 :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사항(에너지기본법 제정 '06. 3. 3)
- 제3조 제10호 :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사항(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 '97. 3. 27)

○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

- 제8호 : 민원조정과 민원 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분리 개정)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 제11호 “바” :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심사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한 심의 (동 조례 2006. 4. 28 개정)
-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사항
  - 제11호 “아” :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등 심의 →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등 심의(개정)
  - 제8호 “아” :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 기준 고시 규정('06. 11.25)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신설)
  - 제8호 “자” :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중 ('06. 4. 18)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 (신설)  
(※ 2009년 까지 한시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 삭제 및 개정, 신설 규정 근거 별지 참조

6.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기획감사실 - 1285(2007. 2. 12)호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에 의한 협의결과 반영

7. 입법예고 : 해당없음

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2007. 3. 29(219회), 원안통과

9. 제안자의견

군정을 조정·기획·통제하며 군정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발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결정사항】 제1호 부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처리관련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8.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 사항
  - 가. 「음성군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계획과 예산심의
  - 나.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사항 심의
  - 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 라.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 마.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등 심의
  - 바.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심의
  - 사.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 결손처분
  - 아.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기준 고시 규정」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
  - 자.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고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 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
9.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 【분과위원회】 ” 를 삭제하고, “제8조 【실비변상】 ” 를 “제7조”로 하며, “제9조 【시행규칙】 ”를 “제8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결정사항】 (생략)</p> <p>1. (생략)</p> <p>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p> <p>3. <u>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p> <p>4. <u>이의신청에 대한 심의</u></p> <p>5. (생략)</p> <p>6. <u>취로대책</u></p> <p>7.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u>」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최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u></p> <p>8. <u>민원 조정과 민원 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u> <b>(신 설)</b></p> <p>9. <u>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u></p> <p>10. <u>불우이웃돕기 사업에 관한 사항</u></p> <p>11. <u>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중 다음 사항</u></p> <p>가. (생략)</p> <p>나. 「<u>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 운용조례</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u>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심의</u></p> <p>다.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u>정보공개여부 심의</u></p> <p>라. (생략)</p> <p>마. (생략)</p>	<p>제3조 【결정사항】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상부기관</u>.....</p> <p>3. <u>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p> <p>4. <u>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명시 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u></p> <p>5.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6.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p> <p>7. <u>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에 의한 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8. <u>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사항</u></p> <p>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 style="padding-left: 20px;">&lt;삭 제&gt;</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사</p>	<p>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p>		
<p>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설치 등에 관한 심의</p>	<p>&lt;삭 제&gt;</p>		
<p>아. 「음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등 심의</p>	<p>마.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등 심의</p>		
<p>자. (생략)</p>	<p>바. (현행과 같음)</p>		
<p>차.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가정의례 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심의</p>	<p>&lt;삭 제&gt;</p>		
<p>카. (생략)</p>	<p>사.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아.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기준 고시」 규정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p>		
<p>(신 설)</p>	<p>자.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고시」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업종 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p>		
<p>12. (생략)</p>	<p>9. (현행과 같음)</p>		
<p>제7조 【분과위원회】 삭제(99.5.17)</p>	<p>&lt;삭 제&gt;</p>		
<p>제8조 【실비변상】 (생략)</p>	<p>제7조 【실비변상】 (현행과 같음)</p>		
<p>제9조 【시행규칙】 (생략)</p>	<p>제8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참고자료》

### 1. 삭 제(타 법령에서 심의기구가 설치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계약심의회위원회” 설치 운영

제32조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설치 운영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심의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2. 삭 제(관련법 폐지)

- 취로대책 : 기존 생활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고  
본사업은 자활사업으로 시행되며 “지방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에서 결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급 및 실천 심의  
건전가정기본법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등 가족계획이나 출산장려  
사업 등을 현재 하고 있는 등 사문화(死文化) 된 법률임.

### 3.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

-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사 →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심사 (조례에 명시)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민원사무처리관련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①항에 의거 대행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사항

- 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 등 심의(개정)

제7조 【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음성군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개발 부하량 운용기준 고시 규정 제6조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허용 심의(신설)

제6조(개발 할당 부하량 운용방법)④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점 배출 또는 비점 배출오염원의개발 할당 부하량이 BOD 2kg/일간 초과할 경우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장입지 여부에 대한 결정(2009년 까지 한시규정) - (신설)

제2조(적용범위) ②제한업종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제한기간)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의안번호	제 19 호
의결 년 월 일	2007년 04월 10 일 ( 제 179 회 )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7년 04월 6 일

의안 번호	제 69 호
----------	--------

제출일자 : 2007년 04월 6 일  
 제출자 : 음 성 군 수  
 (소관부서 : 지역개발과)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 2006. 8. 17(대통령령 제19647호)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세분화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군 도시계획조례 별표의 개정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9647호 : 2006. 08. 17)

### 5.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 2006. 11. 07~11. 27(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7. 조례규칙심의회 : 2007. 01. 18(심의결과 : 원안통과)

### 8. 제안자 의견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본문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영 제85조제3항”을 “영 제8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다목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동표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 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 다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내지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본문중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하고 동표나목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표다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하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 나목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표다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하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 나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타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중심상업지역)** 다목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표라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일반상업지역)** 다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 나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타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 다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자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 나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중 노래연습장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 다목을 삭제하고, 동표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 다목을 삭제하고, 동표마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 나목 및 라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 나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 라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 가목중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표다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 라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 본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하고 동표나목 및 마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카목 내지 거목을 각각 타목 내지 너목으로 하며, 동표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타목(종전의 카목)중 “제13호의 공장”을 “제17호의 공장”으로 하며, 동목(1)중 “차목(1)”을 “카목(1)”로 하고, 동표파목(종전의 타목)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동표하목(종전의 파목)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동표거목(종전의 하목)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동표너목(종전의 거목)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적 내지 다목적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별표 20(농림지역)** 다목적 내지 차 목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카 목적 및 타 목적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다목적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본문중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표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자연취락지구)** 라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관리지역)** 본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하고 동표나목 및 마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타.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카목·타목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b>                      ① ~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생략)</p> <p><b>제35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b>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b>【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생략)</p>	<p><b>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b>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b>제35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b>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b>【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lt; 신설 &gt;</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lt; 신설 &gt;</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p>
<p><b>【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p>	<p><b>【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lt; 신설 &gt;</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lt; 신설 &gt;</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p>
<p><b>【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생략)</p>	<p><b>【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현행	개정안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p>

현행	개정안
<신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신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신설>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신설>	방송통신시설
<신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신설>	발전시설
<p><b>【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b>【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현행	개정안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영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현행	개정안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p>	<p>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 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 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lt; 신설 &gt;</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lt; 신설 &gt;</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의 방송통신시설</p>
<p>&lt; 신설 &gt;</p>	<p>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의 발전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업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p><b>【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p>	<p>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현행	개정안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lt; 신설 &gt;</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lt; 신설 &gt;</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lt; 신설 &gt;</p>	<p>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6】</b>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생략)</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b>【별표 6】</b>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현행	개정안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과 어린이회관</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lt; 신설 &gt;</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lt; 신설 &gt;</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lt; 신설 &gt;</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과 어린이회관</p>
<p><b>【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b>【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현행	개정안
가. ~ 나. (생략)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p>&lt; 신설 &gt;</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lt; 신설 &gt;</p> <p><b>【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p> <p><b>【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현행	개정안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lt; 신설 &gt;</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p>
<p>&lt; 신설 &gt;</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b>【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p>	<p><b>【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현행	개정안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현행	개정안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lt; 신설 &gt;</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lt; 신설 &gt;</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lt; 신설 &gt;</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b>【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b>【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현행	개정안
가. ~ 나.(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중
료시설중 장례식장	교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 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 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신 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 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 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신 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신 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신 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신 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행	개정안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생략)</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p>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현행과 같음)</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중 노래연습장</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p>
<p>&lt; 신설 &gt;</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lt; 신설 &gt;</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lt; 신설 &gt;</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b>【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b>【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lt; 삭제 &gt;</p>

현행	개정안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신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신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신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신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b>【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 나. (생략)</p>	<p><b>【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 삭제 >

현행	개정안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신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신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현행	개정안
<p><b>【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생략)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b>【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현행	개정안
< 신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신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b>【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b>【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b>【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p>	<p><b>【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현행	개정안
<p>(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법 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 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 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 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 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 시설</p>

현행	개정안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별표16 제2호 아목 (1)내지 (5)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음성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현행	개정안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lt; 신설 &gt;</p> <p>&lt; 신설 &gt;</p> <p><b>【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p>	<p>(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b>【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lt; 신설 &gt;</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lt; 신설 &gt;</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영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b>【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현행	개정안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lt; 신설 &gt;</p> <p>&lt; 신설 &gt;</p> <p><b>【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b>【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p>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영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p> <p>(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p>(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p> <p>(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p> <p>(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p>	

현행	개정안
<p>&lt; 신설 &gt;</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p> <p>(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p>(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p> <p>(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p> <p>(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p>

현 행	개 정 안
<p>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것</p> <p>(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p> <p>(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표 생략)</p>	<p>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것</p> <p>(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p> <p>(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표 현행과 같음)</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p>	<p>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lt; 신설 &gt;                      &lt; 신설 &gt;</p>	<p><b>【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 나. (생략)</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b>【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것에 한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b>【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다. (생략)</p>	<p><b>【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p> <p>(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lt; 신설 &gt;</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lt; 신설 &gt;</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lt; 신설 &gt;</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현행	개정안
<p><b>【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 라. (생략)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b>【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                      ※ 음성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적 마목에 해당하는 것</p>

현행	개정안
<p>차. 영 별표 19 제2호사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차목 · 카목의 공장</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타.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카목·타목의 공장</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p>	<p>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lt; 신설 &gt;</p>	<p>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lt; 신설 &gt;</p>	<p>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